

대형판매시설의 보험가입 실태와 대책

글 유관희 연세대학교사이버대학(주) 위험관리연구소 FM기획팀장, ARM, 화재사정사, CFEI

SPECIAL THEME

대형판매시설의
화재위험과 안전관리



1. 머리말

대형판매시설의 보험가입 실태와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대형판매시설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판매시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제2조(정의)

3. "대규모점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둘 이상의 연결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상기 대규모점포(대형판매시설)의 대표적인 예로는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부산에 '신세계 센텀시티'가 개장한 데 이어, 서울 송파구에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쇼핑몰인 '가든파이버'가 건설되는 등 대형판매시설의 규모가 갈수록 대규모화·복합화하고 있는 추세다.

대형판매시설은 그 특성상 피난로 등에 익숙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며 매장 내 물품 및 인테리어 등으로 인해 화재하중이 높아, 화재 등의 대형 재난사고 시 대규모 재산손실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예방 및 안전대책 등 사전·사후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전대책으로는 적절한 내진설계, 방화구획, 피난로 확보, 소방설비 설치 등의 하드웨어(Hardware)적인 측면과, 피난 및 소방에 대한 교육, 훈련 및 비상계획 마련 등 소프트웨어(Software)적인 측면을 들 수 있다. 사후대책으로는 인명 및 재산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 복구방안, 추후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등이 있다.

물론 사후대책보다는 화재 등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나, 경제성 및 효율의 측면을 고려할 때 실제 운영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예방책의 고려와 더불어 이제 시 복구 및 보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중 보험은 인명 및 재산손실에 대한 보상 및 복구비용을 즉각적으로 담보(Cover)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후대책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상기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 대한 보험 가입 비율이 낮고,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를 줄여 형식적으로 가입하는 경향이 많아 대형 재난사고 시 인명 및 재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보험 프로그램 운영방안에 대한 개선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국내 대형판매시설 보험가입 현황 및 실태

이 장에서의 보험가입 실태 및 문제점 분석에 대한 내용은 '특수건물 중 판매시설에 대한 보험가입현황' 자료(한국화재보험협회 제공) 및 '다중이용시설의 보험가입 실태조사 결과' 자료(금융감독원 정례브리핑자료, 2004년 11월 30일 배포)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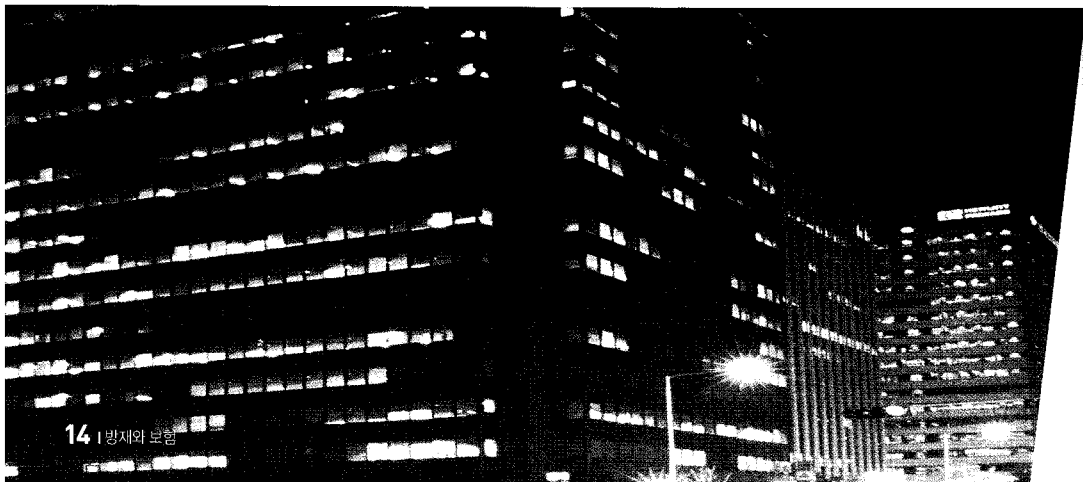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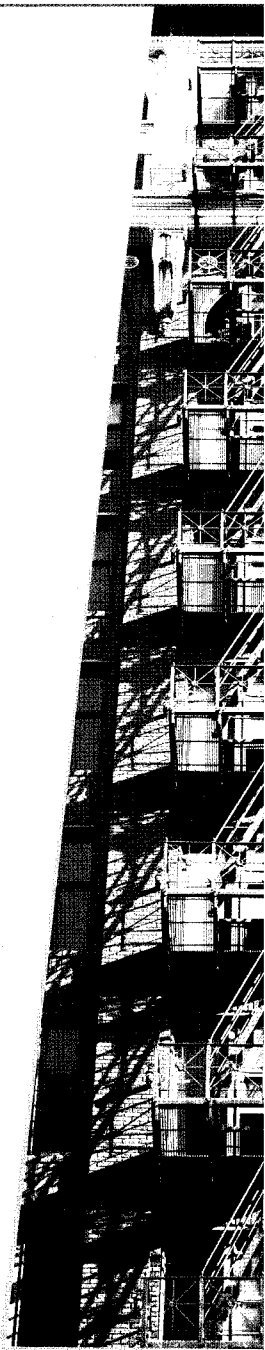
※ 참고로 대형판매시설의 경우, 현행법 상 특수건물로 분류되는 연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에 자연적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수건물 중 판매시설에 대한 가입현황 및 실태를 파악해보면, 2009년 5월 현재 특수건물 대상건수는 25,190건이며, 이 중 판매시설은 총 930건으로 전체 물건 중 3.6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판매시설 930건 중 보험가입건수는 823건(88.5%), 미가입건수는 107건(11.5%)으로,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판매시설은 비교적 높은 보험가입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특수건물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상(연면적 3,000㎡ 이상)의 공장, 백화점, 숙박업소, 빌딩(11층 이상), 아파트(16층 이상) 등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담보가 부가된 화재보험(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어, 실제 보험가입 시 보상한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 부분에 있어 금융감독원 자료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특수건물 중 대부분이 신체손해배상특약부(이하 신배책)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신배책 이외의 배상책임보험에 별도로 가입한 건수는 조사대상 중 절반 이하에 불과해 화재 이외의 사고(붕괴, 침강, 폭발, 파열 등)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보험보장 수준을 살펴보면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조사대상 중 절반 정도가 1사고당 보상한도액이 10억 원 이하이며, 1인당 보상한도도 대부분 1억 원 이하로 대형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2009년 5월 8일부터 개정(2007년 8월 31부 소급적용)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의, 중과실이 아닌 경미한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도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여 주지 않고 경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보험가입 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현재 대다수 대형판매시설의 보험가입에 있어서 재물손해로 인한 복구기간 동안의 영업중단으로 인한 이익손실 및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고정성 경비(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에 대한 담보(Cover)를 제공하여 주는 기업휴지보험 부분에 대한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재발생 시 인명 및 재물 손해에 더하여 복구기간 동안의 지속적인 경비 지출 및 이익 상실에 따른 손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 효율적인 보험프로그램 운영방향

상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형판매시설의 보험가입실태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의 4가지로 압축하여 정리할 수 있다.

① 특정위험 담보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가입

예)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지진, 붕괴, 침강, 폭발 등 부담부)

②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예) 화재배상책임특약 미첨부 화재보험

③ 기업휴지보험 미가입

예) 화재보험의 경우 기업휴지손해담보특약 미가입, 재산종합보험의 기업휴지담보 부문 미가입

④ 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낮은 보험보장 수준

예) 신배책 화재보험 - 사망 시 8천만 원 / 1인당

부상 시 최고 1,500만 원 / 1인당(상해 급별로 상이)

영업배상책임 - 사고 당 3억 / 1인당 1억 / 대물 1천만 원

가스사고배상책임 - 1인당 6천만 원 / 대물 3억 원

시설소유자배상책임담보 / 주차장손해배상책임담보특약 등

최근 경향을 살펴보면, 대형 백화점 및 쇼핑몰 등의 경우 특정위험을 담보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전위험담보(All Risk Cover) 방식의 재산종합보험(Package Insurance)에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상기 '① 특정위험 담보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가입'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무적으로 살펴보면, 보험가입 시 장부가액을 그대로 가입하여 실제 이재발생 시 비례보상 등으로 인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재 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경우는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인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항으로 각 사업장의 경우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재배상책임의 대표적인 예로는 임차자의 과실로 인한 화재발생 시 건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건물 화재 시 인근 건물물의 연소 확대에 의한 피해 발생 시 이에 대한 건물주의 손해배상책임 발생이 대표적인 경우이며, 이에 대한 해당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국내 사업장이 보험가입 시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참고로 미국 등 외국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사업장이 기업휴지보험부문의 가입을 통해 이재 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별 사업장마다 보장수준을 다르게 가져가는 ‘④ 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는 낮은 보험 보장 수준인 경우, 사전에 충분한 수준의 보장수준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절한 보장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물론 현실적으로 상기 언급된 4가지 부분의 개선을 위한 보험료 부담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백화점, 대형쇼핑몰 같은 대형판매시설의 경우, 업종특성상 화재 등 대형이재 발생 시 직접적인 재물손해에 추가하여 심대한 인명피해 발생의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적으로 심각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따라서 대형판매시설에서의 이재 시 충분한 수준의 보험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물, 기업휴지, 배상책임 등 해당 위험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4. 맺음말

최근 대구지하철 화재, 승레문 화재, 이천물류창고 화재 등 대형이재 발생 등으로 인하여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의식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사회가 고도화, 복잡화될수록 새로운 형태의 위험요인이 발생 또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판매시설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재산피해보다 인명손실의 위험이 더욱 크다. 만약 대규모 인명 피해 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심각한 사회적 파급효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 회사, 단체 등 해당 이해관계자 모두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㉞

